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0
----------	-----

2023. 4. 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 2022.6.22.)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조문 신설, 상위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재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의무 및 타 위원회 수행 가능 조항 신설(제9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2) 입법예고(2023. 03. 03. ~ 2023. 03. 23.) : 의견수렴, 의견서 별첨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조례안으로 내용 유지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¹⁾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1. 개정안의 제안배경

-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우조건과 근무환경은 이직을 촉진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직접적인 대인서비스가 주 업무인 사회복지사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²⁾
-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³⁾의 처우보장 및 지위향상은 2011년 제정되고, 2012년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 이와 관련해 2021년 12월 같은 법률 개정안⁵⁾이 통과된 바, 개정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이에 강남구도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강남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담당하는 최고 정책자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존중한 취지로 판단됨

2) 조상미, 정희수, & 한예선.(2020).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조건: 무엇이 변화되고 그 경험은 어떠한가?. 한국사회복지학, 72(3). 85-107.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4) 김수정·김광병(202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분석. 사회복지법제연구 12(2).

5)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추진 현황

- 서울시는 2020년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대표적 성과로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금수준 대비 95%까지 끌어올렸으며, 전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하였음

3. 향후 과제 및 개정안의 필요성

- 서울시와 강남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을 설정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2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여전히 낮은 보수수준, 높은 업무강도, 클라이언트의 폭력 등에 대한 개선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연구결과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 임금 보수체계에 대한 합리적 검토,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집행부는 본 개정안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4. 종합의견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사례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돌봄 등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는 실질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음
- 본 개정안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강남구 차원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에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
----------	-----

제출연월일 : 2023. 4. 6.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 2022.6.22.)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조문 신설, 상위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재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의무 및 타 위원회 수행 가능 조항 신설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2) 입법예고(2023. 03. 03. ~ 2023. 03. 23.) : 의견수렴, 의견서 별첨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조례안
으로 내용 유지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 중 “지위향상”을 “지위 향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에 따라 ----- ----- -----.</p> <p><u>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u></p> <p>① <u>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u></p>
<p><u>제9조(포상)</u>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u>지위향상</u>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p>	<p><u>제10조(포상)</u>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u>지위 향상</u>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p>

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생략)

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안에 따른 추가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
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안에 따른 추가비용 미발생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주사보 정란정(02-3423-5789)